

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3 - 41호

『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3년 9월 16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상 입장권 구입 관련 규정이 전용사용자에 대하여 이중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시정하고
- 그 밖에 모순된 표기와 불합리한 용어 등을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군·구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를 신설함
(안 제4조)

나. 사용료 전액 감면 대상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·주최하는 행사 및 경기를 추가함(안 제13조)

다. 입장권 징수 규정 중 “체육시설에 입장할 때,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”를 “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행사 및 경기를 관람하거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장하는 때”로 개정(안 제15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30일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,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(참조 :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24, 팩스 032-440-8764, 이메일 thisman777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 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 출 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 주 소 : ○ 성 명 : ○ 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 천 광 역 시 의 회

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0호 중 “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”을 “학생 또는 12세 이하의 사람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1호 중 “자와”를 “사람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3호와 제14호 중 “자를”을 각각 “사람을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1. “군·구”란 시의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“행사”를 “행사 및 경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8호로 하며,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군·구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

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”를 “생활체육 프로그램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상설스포츠교실”을 “생활체육 프로그램”으로 한다.

제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제9조제1항 전단 중 “다음과”를 “다음 각호와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조기 : 06:00~09:00까지
2. 주간 : 09:00~18:00까지
3. 야간 : 18:00~다음날 06:00까지

제10조제1항 중 “하며, 관람입장료는 별표9와 같이 정한다”를 “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제5항을 삭제한다.

③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체육시설별 활용여건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,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④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신규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관람입

장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며, 생활체육프로그램 이용사용료 및 주차요금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국가나 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

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체육시설에 입장할 때,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”를 “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행사 및 경기를 관람하거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장하는 때”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“국가 및 시가 주관하는 행사”를 “국가나 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”로 하며,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“주최”를 “주최·주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입장료”를 “관람입장료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체육관리운영위원회”를 “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제23조제1항 단서 중 “예외로 한다”를 “대표구 외에서도 대표할 수 있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제11조제1항에 의해 관람권을 발행하는 전용사용자는 관람권의
매표 및 수표를 관리하여야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(제2조제1호 관련)

연번	명 칭	시 설 명	기 능	위 치
1	인천월드컵경기장 (문학경기장)	주경기장	육상·축구	인천 남구 매소홀로 618
		보조경기장	육상·축구	인천 남구 매소홀로 618
2	시립문학야구장		야 구	인천 남구 매소홀로 618
3	시립도원체육관		농구·배구·핸드볼 등	인천 중구 샛골로 41번길 10
	시립도원수영장		수 영	인천 중구 샛골로 41번길 22
4	인천삼산월드 체육관(Incheon World Gymnasium)	주경기장	농구·배구 등	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60
		보조경기장	농구·배구 등	
		인조잔디 축구장	축 구	
5	시립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		롤러스케이트 인라인하키	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499
6	시립가좌테니스장		테 니 스	인천 서구 가좌로 11번길 7
7	시립옥련사격장		사격	인천 연수구 독배로 172번길 142
8	궁도장	시립계산궁도장	국 궁	인천 계양구 계양산로 105번길
		시립수봉궁도장	국 궁	인천 남구 수봉로 95번길 32
9	시립수봉양궁장		양 궁	인천 남구 수봉로 95번길 32
10	인천국제벨로드롬 (서운사이클경기장)		싸이클	인천 계양구 서운3길 11
11	시립다목적운동장		하키, 정구	인천 남구 소성로 360번
12	인천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		수영배드민턴 등	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51
13	인천광역시계산국민체육센터		수영배드민턴 등	인천 계양구 주부토길 580번지
14	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		축구야구 등	인천 연수구 동춘동 1129번지 1호
15	송도 LNG 야구장		야 구	인천 연수구 동춘동 1119번지
16	인천축구전용경기장		축 구	인천 중구 참외전로 246

연번	명 칭	시 설 명	기 능	위 치
17	문학박태환수영장		수 영	인천 남구 문학동 515
18	송림체육관		배 구	인천 동구 송림동 11-16
19	열우물테니스경기장		테 니 스	인천 부평구 십정동 101-2
20	열우물스쿼시경기장		스 쿼 시	인천 부평구 십정동 101-2
21	계양체육관		배드민턴	인천 계양구 서운동 111
22	계양아시아드양궁장		양 궁	인천 계양구 서운동 111
23	남동체육관		체 조	인천 남동구 수산동 409-1
24	남동아시아드럭비경기장		럭 비	인천 남동구 수산동 409-1
25	강화고인돌체육관		태 권 도	인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46-2
26	강화아시아드BMX경기장		B M X	인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46-2

[별표9]

체육시설 관람입장료(제15조제2항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기 준	요 금	비 고
입장료	1인 1회	500	주최(주관)측에서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징수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<u>정의</u> 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9. (생략) 10. “어린이”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<u>자</u> 를 말한다. 11. “청소년”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<u>자와</u> 학생증을 소지한 중·고등학생을 말한다. 12. (생략) 13. “어른”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<u>자</u> 를 말한다. 14. “노인”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<u>자</u> 를 말한다. 15. ~ 20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 <u>뜻은</u> ----- ----- 1. ~ 9. (현행과 같음) 10. ----- <u>학생 또는 12세 이하의 사람을</u> <u>을</u> ----- 11. ----- ----- <u>사람과</u> ----- ----- 12. (현행과 같음) 13. ----- ----- <u>사람을</u> 말한다. 14. ----- --- <u>사람을</u> ---- 15. ~ 20. (현행과 같음) 21. “ <u>군·구</u> ”란 시의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
제4조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 ① (생략) 1. 국가 또는 시가 주최·주관하는 <u>행사</u> 2. (생략) 3. <u><신설></u> 3. (생략) 4. (생략) 5. (생략) 6. (생략) 7. (생략)	제4조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 ① (현행과 같음) 1. ----- -- <u>행사 및 경기</u> 2. (현행과 같음) 3. <u>군·구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</u> 4. (현행 제3호와 같음)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 6. (현행 제5호와 같음) 7. (현행 제6호와 같음) 8. (현행 제7호와 같음)

현행	개정안
제5조(시설의 개방) ① ~ ② (생략)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<u>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</u> 운영할 수 있으며 년간, 월간, 주간, 일간, 시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 1. (생략) 2. <u>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 방법</u>	제5조(시설의 개방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생활체육프로그램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생활체육프로그램</u> ----- -----
제6조(개방 제한) (생략)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6조(개방 제한) (현행과 같음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</u>
제9조(사용 시간) 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허가 시간은 <u>다음과 같다.</u> <u>조기 : 06:00~09:00까지</u> <u>주간 : 09:00~18:00까지</u> <u>야간 : 18:00~23:00까지</u> <u>심야 : 23:00~06:00까지</u>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제9조(사용 시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다음 각 호와</u> ----- <u><후단 삭제></u> 1. <u>조기 : 06:00~09:00까지</u> 2. <u>주간 : 09:00~18:00까지</u> 3. <u>야간 : 18:00~다음날 06:00까지</u> <u>지</u>

현행	개정안
제10조 (사용료) ① 체육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, 별표 3,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와 같이 하며, 관람입장료는 별표9와 같이 정한다. ② (생략) ③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신규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관람입장료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 ④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체육시설별 활용여건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요금 및 징수방법은 주차장 여건을 감안하여 「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 ⑤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체육시설내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와 그 밖의 교육프로그램 사용료는 시설별 여건에 따라 필요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	제10조(사용료) ① ----- ----- ----- 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 ③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체육시설별 활용여건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,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 ④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신규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관람입장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며, 생활체육프로그램 이용사용료 및 주차요금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 <삭제>

현행	개정안
제13조(사용료의 감면) ① (생략) ② (생략) 1. <u>국가 또는 시가 주최, 주관하는 행사</u> 2. ~ 3. (생략)	제13조(사용료의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<u>국가나 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</u> 2. ~ 3. (현행과 같음)
제15조(입장권) ① <u>체육시설에 입장할 때,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.</u> 1. <u>국가 및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자</u> 2. 경기 및 행사의 <u>주최측 담당임원, 출전선수, 신문, 통신, 방송사의 체육관련 출입기자</u> 3. (생략) ② <u>체육시설 입장료는 별표9와 같다.</u>	제15조(입장권) ① <u>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행사 및 경기를 관람하거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장하는 때</u> ----- ----- ----- 1. <u>국가나 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</u> ----- 2. ----- <u>주최·주관</u> ----- ----- 3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관람입장료</u> ----- -----
제22조(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)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<u>체육관리운영위원회</u> 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.	제22조(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) ① ----- ----- ----- <u>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</u> -----

현행	개정안
제23조(매표 및 검인) ① 관람권, 입장권은 해당 체육시설 매표구에서 매표한다. 다만,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<u>예외로 한다.</u> ② (생략) ③ <u>예매를 제외한 매표 및 모든 수표관리는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자(주최측)가 한다.</u>	제23조(매표 및 검인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매표구 외에서도 매표할 수 있다.</u>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제11조제1항에 의해 관람권을 발행하는 전용사용자는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를 관리하여야 한다.</u>

[별첨 1]

관련법령 검토와 발체사항

관계법령	☐ 지방자치법 - 제136조(사용료) - 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- 제5조(전문체육시설) - 제6조(생활체육시설) - 제8조(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) 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- 제4조의2(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) 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- 제4조의2(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)
관련법규 정비대상	
관련자료	

관계법령 발췌사항

【지방자치법】

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

【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】

제5조(전문체육시설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·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,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제6조(생활체육시설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제8조(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)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·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【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】

제4조의2(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)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

를 면제할 수 있고,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.
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
2. 다음 각 목의 단체(해당 단체의 지역단체,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)가 주관하는 행사
 - 가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
 - 나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
 - 다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
4. 65세 이상의 사람, 장애인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
5.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

【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】

제5조(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)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,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

[별첨 2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- 체육시설의 관람입장료 징수 관련 규정이 전용사용자에 대하여도 입장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운영상의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람입장료 징수 규정 개정에 따라 관람입장료 감면 비용이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임

4. 작성자 : 건설교통위원회 이재병 의원